납품 계약서

 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칭함)와 주식회사(이하 "을"이라 칭함)는 "갑"을 구매자로 하 고 "을"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.

# 제1조 (발주내역)

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품 명 | SPEC | NO | 단 가 | 수 량 | 금 액 | 납 기 | 비 고 |
|  |  |  |  |  |  |  |  |

단, 상기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, 수량, 납기는 "갑", "을"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# 제2조 (원·부자재)

"을"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"갑"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·부자재를 자체 조달,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, TAG은 "갑"이 공급한다.

# 제3조 (견본승인)

"을"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"갑"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"갑"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 제4조 (하도급금지)

"을"은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"갑"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, 이에 위반할 시는 "갑"의 처리에 따른다.

# 제5조 (비밀유지의무)

"을"은 "갑"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(PATTERN 포함) 및 KNOW-HOW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생산완료후 "갑"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"갑"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.

# 제6조 (검 사)

1. "을"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"갑"이나 "갑"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 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2.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"갑"의 검사기준에 의한다.
3. 제품의 이화학 검사(원자재 혼용율, 세탁견뢰도, 땀 견뢰도, 수출용 등)는 "갑"이 지정하는 공공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, " 급"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 제7조 (불합격품의 처리)

1. 생산된 제품은 "갑"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는 불량 상태가 경미한 B급,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.
2. 불합격품 중 B급은 "갑"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( )％로 인수할 수 있으며 "갑"이 인수하 지 않을 시는 "을"은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.
3. "을"은 불합격품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 라도 출고할 수 없다.

# 제8조 (상표관리)

1. "을"은 "갑"이 요청한 제품에 "갑"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. 또한, "을"은 작업 완료 후 "갑" 의 지시에 따라 LABEL 및 TAG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"갑"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.
2. "을"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"갑"의 상표, 상호 또는 LABEL,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.

# 제9조 (납 품)

1. 제품의 납품은 "갑"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(B급중 "갑"이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)에 한 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.
2. 납품은 LOT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제품의 납품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여 "을"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.
4. 납품장소는 "갑"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# 제10조 (대금결재)

"을"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"갑"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 하여야 한다. 단,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"을"의 계약 사항 위반등으로 "갑"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# 제11조 (손해배상)

1. "을"은 "갑"이 제공한 DESIG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.
2. "을"은 검사 불합격품, 재고제품 또는 "갑"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시 중에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%를 손해배상금으로 "갑"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,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"갑"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. 단, "갑"의 상표, 상호 또는 LABEL,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시중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

는 정산판매가격의 %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# 제12조 (납품 불이행)

1. 수량

"을"의 납품수량이 계약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%를 손해배상 으로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1. 납기

"을"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3/1000씩 배상 하며 10 일 이상 지연시는 10일 단위로 지연배상율을 배증하여 적용한다.

# 제13조 (담보제공)

1. "을"은 본 계약의 이행 및 "을"이 생산,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, 기타 예 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"갑"의 요청에 의거 근저당 또는 기타 "갑"이 인정하는 담보를 "갑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2. "을"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, 제품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"을"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"갑"은 최고 또는 이행의 제공 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
# 제14조 (유효기간)

1.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쌍방 합의에 의하 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2. 본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의무 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.

# 제15조 (양도금지)

"을"은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"을"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, 이전하지 아니한다.

# 제16조 (분쟁해결)

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써 최종 해결한다.

# 제17조 (특 약)

**제18조 (기 타)**

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.

상기 계약내용을 확인,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"갑","을"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(갑)

(을)